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2. 7. 22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7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2. 7. 12 :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이유

○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
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
징수하였으나,

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(2002.2.4, 법률 제6652호) 되어 시·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,

-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 신설
 -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: 1건당 50,000원
 -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: 1건당 20,000원
 -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: 1건당 20,000원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본 조례는 2002년 2월 4일, 법률 제6652호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,

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고,

이에 대한 수수료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,

2002년 8월 5일 개정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,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